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20

발의연월일: 2022. 7. 6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강선우

김민석 · 김성주 · 김윤덕

김한규 • 민병덕 • 안규백

윤준병 • 이명수 • 최인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 로 컨테이너,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됨

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·과속·과적·졸음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.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.

이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조의4제2항제2호 등).

법률 제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4제2항제2호 중 "시멘트"를 "시멘트 또는 철강재"으로 한다.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4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	제5조의4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
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	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
공표) ① (생 략)	공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	②
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·의	
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	
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	
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	
공표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	2
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	
<u>시멘트</u>	시멘트 또는 철강재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	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
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2부터 제	제2조(유효기간)
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	
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	
분,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	
지,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	
제1항제1호는 <u>2022년 12월 31</u>	2027년 12월 31
<u>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<u>일</u>